

제30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성 의원 대표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태 성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태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임원에 대한 규정이 있고 서울특별시 조례도
이에 따라 각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임원의 직무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기관장, 감사, 이사의 직무에 대한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입법 체계성과 편의성을 제고 하고자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